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87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【집행부발의】

검토보고서



2022. 4.

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2. 4. 13.

경제도시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제출일자: 2022. 4. 1.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2. 4. 1.
- 검토기간: 2022. 4. 2. ~ 4. 6.(5일간)

2. 제안이유

-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과 신기술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,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제정조례안 : 붙임
- 관계법령
가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조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다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9조의3

○ 비용추계: 비대상

○ 입법예고(2022. 3. 11. ~ 2022. 3. 31.) 결과: 의견없음

○ 규제 심사: 해당사항 없음

○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○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○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신기술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.
- 최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과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완성차, 부품업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 정비업계에도 큰 변화를 줄 것임.
- 이러한 자동차 정비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본 조례에 열거된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사항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시책 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>

대구광역시 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에게 기술 교육 · 장비 · 시설개선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동차정비업”이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,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, 자동차전문정비업,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.
2. “자동차정비 사업자”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.
3. “종사자”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 등)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
2.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
3.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지원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,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로 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- 자. 공유재산(公有財產) 관리
- 차. 주민등록 관리
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

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- 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농림 · 수산 · 상공업 등 산업 진흥

- 가. 못 · 늚지 · 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나. 농산물 · 임산물 · 축산물 ·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
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- 라. 복합영농의 운영 · 지도
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 · 지도
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- 사. 공유림 관리

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자. 가축전염병 예방

차. 지역산업의 육성 · 지원

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· 지원

하.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· 관리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 · 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 · 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 · 군도(郡道) · 구도(區道)의 신설 · 개선 · 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 ·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거. 주차장 ·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5. 교육 · 체육 · 문화 · 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 · 유치원 ·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 종 학교의 설치 · 운영 · 지도

- 나. 도서관 · 운동장 · 광장 · 체육관 · 박물관 · 공연장 · 미술관 · 음악당 등
공공교육 · 체육 ·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 · 등록 · 보존 및 관리
 - 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 - 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
지도 · 감독
 - 나. 지역의 화재예방 · 경계 · 진압 · 조사 및 구조 · 구급
7. 국제교류 및 협력
- 가. 국제기구 · 행사 · 대회의 유치 · 지원
 - 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· 협력

□ 「자동차관리법」

제69조의3(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 (이하 “정비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 · 추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
2.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3. 정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· 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